

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3일
신청인	기관(업체)명	전화번호		
	대표자 성명	주사무소 소재지		
	등록번호	등록일(발급일)		
재발급 신청사유				

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6조제6항·제7항에 따라 화재위험
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소방청장 귀하

첨부서류	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쓸 수 없게 된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	수수료
		없음

유의사항

평가대행자등록증 란은 최초 등록번호 또는 발급일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